

# 자동차 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 자손사고 보험 -

김 희 중  
(한국자동차 보험(주) 지점장)

1.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인 상대방의 손해를 금전적  
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피해  
자가 되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로서, 가해자인 상대방  
으로 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든  
지, 자기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험의 유형과 자동  
차를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수요  
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의 보험 종  
목이 개발되어 있다.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시에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여  
야 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이 종  
합 보험 대인 배상 보험이며, 상  
대방의 차량이나 도로 구조물(가  
드 레일 등), 건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등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  
용을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  
하는 보험이 종합 보험 대물 배상  
보험이다.

대인 배상이나 대물 배상은 자  
동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에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함으  
로써 생기는 자기의 금전적인 손  
실을 보험으로 보전하는 이른바

배상 책임 보험이다.

또 다른 경제적 위험으로 자기  
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파손되거  
나, 불행하게도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경우처럼 가  
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든지, 가해  
차량의 보험(대인 배상 또는 대물  
배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  
는 경우도 있으나,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차량 파  
손으로 인한 수리비 등 금전적 지  
출은 종합 보험 차량 손해에 의하  
여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  
후유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는 종합 보험 중의 자손 보험(자  
기 신체 사고 보험)으로 대비하여  
야 한다.

2. 이상과 같이, 자동차를 사용  
하던 중 자기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로 인한 금전적  
인 지출이나 손해에 대한 보험보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손  
보험이나 우리나라의 생명 보험이  
나 손해 보험의 상해 보험 상품이  
다 그러하듯 자손 보험도 정액보  
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  
이 있다.(예:사망1,000만원, 부상  
최고 한도 300만원, 후유장애 최  
고 한도 1,000만원)

머리를 다쳐 뇌출혈로 뇌수술을

한 경우, 실제 치료비를 자손 보  
험 부상 보험금 최고 한도 300만  
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것은 종합 보험 대  
인 배상이 치료비 등 손해를 무한  
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  
다. 이와 같은 자손 보험의 단점  
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  
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충돌 사  
고의 경우, 그것이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  
으로 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겠지  
만, 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없  
고, 또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  
는 때에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손 보험으로 보  
상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만일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본인의 손해(치  
료비, 후유장애, 사망)에 대하여  
종합 보험 대인 배상의 지급 기준  
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보험은 가해 차량의 존재  
를 전제로 하며 보험금액에 한도  
는 있으나, 그 한도가 1억원이며,  
보험료 또한 싼 편으로 이용 가치  
가 높은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  
렇다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  
다 운전 미숙으로 가드 레일을 충  
격하든지,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경  
우라든지, 신호 대기중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오  
로지 자기 잘못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자손보험으로만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밖에 없다.

3. 자손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로는 첫째, 보험가입자(정확하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현장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정액으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부상이며 치료를 받은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각각 금액 상의 한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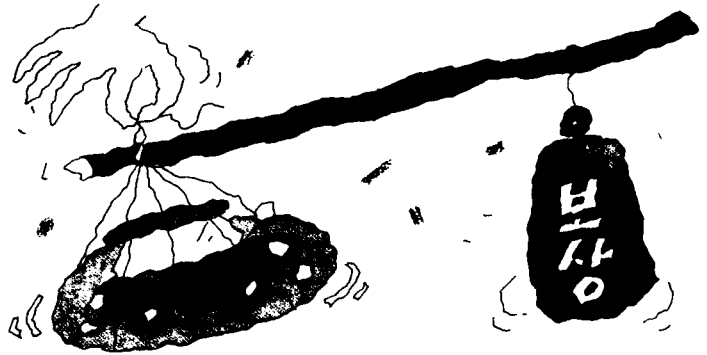
셋째, 피보험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정신적, 신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예:40만원~1,000만원).

〈사례 I〉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상태(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중 자동차에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사망한 경우.

자손 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유상 운송, 고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 경우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음주한 상태이므로 자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사례 II〉



화물 차량의 운전자가 국민학교 운동회에 참석하여 운동회를 마친 후, 자녀와 친구들을 적재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자녀와 그 친구들이 부상한 경우.

자녀의 친구들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는 종합 보험 대인 배상은 물론, 자손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위 경우 운전자의 자녀는 자손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자녀가 조수석과 같이 승차용 구조 장치 아닌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에는 자손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사례 III〉

승용차를 운전하고 88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회사원 A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승용차 운전자 B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와 충격함으로써 회사원 A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B소유 차량이 종합 보험 대인 배상에 가입하고 있으면 A는 자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인하여 가해 차량의 종합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자손 보험으로 보상받기 전에 먼저 다른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B가 운전한 차량의 일방 과실 사고이므로 B차량이 가입한 종합 보험 대인 배상으로 A의 치료비는 물론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후유장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A가 가입한 자손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례 IV〉

고향에 성묘하러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답답하다고 안전벨트를 풀고 있다가 가드 레일을 충격, 부인이 부상한 경우, 부상 치료비에 대하여 자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자손 보험의 사망 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에 있는 피보험자가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5%를 감액하게 된다. 그러나 부상 치료비에 대하여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1급 상해(뇌출혈로 수술을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5%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된다.